

##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0
----------	------

발의연월일 : 2023. 11. 9.

발의자 : 이명녀, 김도운, 박경흠,  
문기호, 안영호, 정재환,  
홍영진, 문희성, 강혜순,  
김태욱

### 1. 제정이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제3조 ~ 제4조)
- 다. 신청안내 (제5조)
- 라. 신청 및 지급방법(제6조)
- 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제7조 ~ 제8조)
- 바. 지급대상자 관리(제9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 가. 「노인복지법」 제13조

###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3. 11. 3. ~ 11. 10.(8일간)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금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부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b>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b>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전입일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거주기간 :                    )                    확인 후 기재		
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신 청 인:</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지급대상자와의 관계:</span> <span>)</span> </div>						
<b>중구청장 귀하</b>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 위임장(대리신청시)					
신청시 유의사항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중구 외로 전출한 경우 ※전액 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신청인</span> <span>(서명 또는 날인)</span> </div>						



## 관 련 법 령

### □ 「노인복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 3. 작성자

- 소 속: 노인장애인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김남희
- 연락처: 290-3611